



經濟企劃院은 不公正去來行爲로 지정된 허위 과대광고의 규제대상 등 세부운용지침을 物價對策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는데 운용기준 전문은 다음과 같다.

規制되는 행위

▲物品(또는 用役)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▲경쟁자의 물품(또는 용역)을 사실과 다르게 증상·비방하는 등의 선전·광고를 함으로써 ▲고객을 위인하거나 일반소비자를, 기만하는 경우.

規制의 基準

① 對象=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자자 자기 또한 다른 경영자가 공급하는 상품(또는 용역)의 품질·규격·원산지·제조방법·기타의 내용이나 가격·수량·기타의 去來條件에 대하여 행하는 表示, 其他의 광고로서 다음에 揭記하는 것을 말한다
▲상품·용기 또는 포장자체와 이들의 첨부물에 의한 표시, 기타의 광고

▲見本·傳單 「팜플렛」광고성냥·입장권·기타에 유사한 것에 의한 광고

▲포스터·간판 「베온사인」 「에드빌론」 기타 이에 유사한 광고

▲신문·잡지·기타의 出版物·放送·映寫 또는 電光에 의한 표시, 기타 공중에 대한 광고

▲訪問廣告 實演에 의한 광고등.

② 品質=原材料·純度·첨가물·鮮度·영양가 등을 말한다.

③ 規格=品質 기타의 내용에 대하여 국가·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정한 규격·등급·기준등을 말한다.

④ 其他의 內容=간접적으로 품질·규격에 영향을 미치는 有効期間등을 말한다.

⑤ 去來條件=상품(용역)의 내용에의 가격·수량과 보증기간·지급조건 「아파트·서비스」등이 이에 해당됨.

⑥ 虛僞·誇張의 요건=일반소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것.

▲ 상품(또는 용역)의 내용에 대하여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다고 誤認시키는 경우 (⑦⑧항)

▲ 去來條件에 대하여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하다고 誤認시키는 경우 (⑦⑧항)

▲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(용역)의 내용이나 거래조

건이 다른 경영업자가 공급하는것보다 현저히 우량, 또는 유리하다고 誤認시키는 경우(㉑항)

▲다른 경영업자가 공급하는 상품(用役)의 내용이 나 거래조건이 실제보다도 현저히 불량, 또는 불리하다고 선전·광고하는 경우(㉑㉒)

㉑ 一般消費者를 誤認시키는 경우=▲表示 其他의 광고가 일반소비자에게 주는 인상 등이 실제의 사실과 차이(誤認)가 있을것.

▲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·과실은 불문

▲文字·繪畫등에 의한 적극적인 표현이외에 표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소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誤認시키는 것을 포함

▲誤認可能性이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오인의 결과 표시된 상품의 구입여부는 不問.

▲虛偽·誇張의 정도는 광고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容認되는 정도를 넘어서 부당하게 顧客을 유인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.

㉒ 실제의 사실보다 현저히 優良(또는 有利)한 지의여부=일반소비자가 평가하는 利用價值, 기술적인 시험분석결과 및 시장가치의 高低등 去來狀況등을 기준으로 정함.

㉑ 眞實한 事實의 比較 廣告=광고속에서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(用役)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

같이 비교선전하는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나 他社 製品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 제함.

規制를 받는者

▲不當한 表示·선전등 광고를 한 상품(用役)을공 급하는 사업자(當該商品을 生産 販賣하는 사업자 또 는 用役의 供給업자)

▲종업원이 허위·과장광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 에게 책임이 귀속됨.

虛偽誇張의 實例

▲원재료를 오인케하는 허위의 상품명

▲원재료의 오인

▲식품첨가물의 사용의 오인

▲가공의 二重價格

▲효능이 없는 醫藥品

▲原産地의 오인

▲不動産의 立地·환경등에 관한 과대광고

▲과대포장및 과대경품부 판매

▲실제와 다른 受賞의 표시

▲허위의 비교광고

第34號 食品工業

1970年 10月 18日 登錄 第355號 1976年 10月 30日 發行

發行兼 編輯人 朴 炳 圭

發行處 社團 法人 韓國食品工業協會

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3街 59의 22

(영한빌딩 별관 202. 203호)

☎ 8760 ☎ 6035

對替口座·서울中央 610501

印刷人 由 盛 印 刷 株 式 會 社

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冷泉洞 218

☎ 3791 ☎ 5826

(隔月刊)